



문 서 : 목상총 제109호

기안일자 : 2020. 1. 14.

수 신 : 중소기업(중견/강소)기업 대표

참 조 : 인사/총무부서장

제 목 : 2021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, 보건복지부 등 인력채용 지원사업 안내

1. 장기적인 불황에도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.

2. 본 회의소는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로 부터 **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** , **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’** , **‘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’** , **‘시니어인턴십’**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구인난을 해소하고 기존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경영안정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, 동 사업의 참여로 지역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별 첨 : 인력채용 보조사업 안내문 각 1부.

목 포 상 공 회 의 소 회 장 이 한 철



목포상공회의소 신규 채용 및 재직자 지원사업 주요내용

사 업 명	참여대상	지원내용	부 담 금	비 고
청년내일 채움공제	신규 채용 근로자 만 15세 ~34세 이하	근로자 자산형성 2년형-1,2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근로자 매월 12만 5천원 ● 기 업 부담 없음 	군필자 복무기간 가산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	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만 15세 ~34세 이하	근로자 자산형성 5년형-3,0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근로자 매월 12만원 ● 기 업 5년간 1,200만원 20만원 60개월 (전액손비처리 및 최대 25% 세액공제) 	최대 39세
시니어인턴십	만 60세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	기업지원금 6개월간 222만원 지원	기업부담 없음 전액 정부지원	장기취업지원 90만원 추가지급
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	신규 채용 근로자 만 15세 ~34세 이하	청년 1인당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	기업부담 없음 전액 정부지원	장기취업 지원 90만원 추가지급

「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」 안내

□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

- 중소기업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
- 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

□ 지원 내용

- ▶ 2년형 :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600만원)와 기업(3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 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+이자 수령

□ 참여기업 자격요건

- 참여기업 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다만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~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
□ 참여자 자격요건

○ 2년형

(연령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
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

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
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

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

*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

□ 지원 내용

- 2년형 :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600만원)와 기업(3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 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+이자 수령

□ 문의 : 목포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 박희영

Tel : 061-242-8581 (내선번호2번) / Fax : 061-242-8584

E-mail : mokpo@korcham.net

「2021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 안내

□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

중소(중견)기업 사업주, 청년근로자(만15~34세이하, 6개월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)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(5년)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제

□ 지원 내용

- ▶ 청년·기업·정부가 함께 적립 ->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
- ▶ **청년** : 5년간 720만원 적립(최소 월 12만원 × 60개월)
 - ※ (납입방식)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(5일, 15일,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)에 자동이체
- ▶ **기업** : 5년간 1,200만원 적립(최소 월 20만원 × 60개월)
 - ※ 세제혜택 : (청년)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(50%)
(기업)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(25%)
 - ※ 납입방식 :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(5일, 15일,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)에 자동이체
- ▶ **정부** : 3년간 1,080만원 적립(3년간 7회 분할적립)
 - ※ (적립방식) 3년간 총 7회(1, 6, 12, 18, 24, 30, 36개월)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

□ 참여기업 자격요건

- 참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3 (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)에 따른 중견기업

□ 참여자 자격요건

- 참여자 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·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(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가산하여 최대 39세까지 가입가능)

□ 가입 제외 대상

- 1)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는 대표자)
- 2)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·자매
- 3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(청년내일채움공제, 희망두배 청년통장, 청년연금·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)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
- 4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F-2,5,6 비자보유자 제외)
- 5)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
- 6)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

- 문의 : 목포상공회의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담당자 박희영
Tel : 061-242-8581 (내선번호2번) / Fax : 061-242-8584
E-mail : mokpo@korcham.net

「2021년 시니어 인턴십」 안내 (근무시작 전에 신청)

□ 「시니어 인턴십」 : 만 60세 이상 자를 고용 할 경우 업체에 정부 지원금 지급

□ 내 용

유형	계	인턴 기간	인턴 이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 약정
일반형	222만원	111만원 (최대3개월x37만원)	111만원 (최대3개월x37만원)

▶ 2년 이상 계속 고용 할 경우 **장기취업유지지원금**으로 1인 90만원 수령 가능
지원기준일(18개월 경과시점)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
* 제외직종 :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경호원, 청원경찰, 시설·특수 경비원,
기타 경호·보안 종사원, 경비원, 청소원,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,
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, 구두 미화원, 세탁원, 가사 도우미,
의회 의원·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,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리자,
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, 학교 교사 3개 직종, 장학관,
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, 경찰관 및 수사관, 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,
군인 4개 직종, 우편물 집배원

□ 참여기업 자격요건

○ 참여기업 : 4대보험가입 사업장 (기업, 협회, 단체, 식당 등)

참여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비향락업체 / 다단계판매업체 / 임금체불사업장 ▶ 3개월 미만 계절수요 업체 ▶ <u>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</u> ▶ <u>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 지원받는 기업</u>
----------	--

□ 참여자 자격요건

○ 참여자 : 만 60세(61년생은 생일 지난 분) 이상이고, 참여시작일에 실업자이어야 함.

참여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u>사업자 등록증 소지자</u> ▶ 정부/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증인 자 ▶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<u>직장</u> 가입자 ▶ 참여직전 3개월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 있는 자 (단 일용직 근무자는 참여가능) ▶ <u>인턴십에 참여했던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</u> ▶ 사업주와 배우자, 직계인척, 직계존비속, 혈족관계에 있는 자
----------	--

□ 문의 : 목포상공회의소 시니어인턴십 담당자 강대광

Tel : 061-242-8581 (내선번호2번) / Fax : 061-242-8584

E-mail : mokpo@korcham.net

「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」 지원 신청 안내

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?

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)를 지원해주는 사업

2 지원 요건

가. (참여 신청직전 월말기준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.

— 5인 미만 참여가능 기업 :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·재생에너지 산업분야, 성장유망업종 등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면 해당

나. 채용 청년의 직무는 IT관련 직무여야 함

— 콘텐츠 기획형, 빅데이터 활용형, 기록물 정보화형, 기타유형

다. (청년요건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,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

3 지원 내용

○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(최대 월 180만원), 간접노무비(월 10만원) 지원

지급 예시	월 보수 총액	지급액	간접노무비
	200만원 이상	180만원	10만원
200만원 미만	지급 임금의 90%(원단위 절사)		10만원

— (지원한도)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까지 지원하며, 별도 승인시 최대 2배까지 지원 가능함. (단, 5인 이상 기업은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)

— (기 타) 청년이 지급받은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(20.12.31까지)

4 신청 방법

○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」 홈페이지 (www.work.go.kr/youthjob) 온라인 참여 신청 → 운영기관을 「목포상공회의소」로 지정하여 신청 완료

○ 문 의 처 : 목포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

(TEL. 061-242-8582, FAX. 061-242-8584)